

한국운동역학회 회장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일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회장선출방법은 선거권이 있는 임원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은 고문, 자문위원, 회장, 명예회장, 상임이사, 감사, 이사를 지칭한다.

(제정 : 2011년 11월 18일)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함)는 현 회장이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운동역학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6년 이상 임원을 역임하고, 본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약력 1부
2. 후보자의 소견 1부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총회개최 3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임원들에게 알려야한다.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임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9조(선거일정)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3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투·개표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학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기표란을 둔다.
3.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4.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5.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이하의 임원이 참관할 수 있다.
6.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을 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7.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1조(선출방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선관위는 회장당선자를 정기총회에 공고하여 인준을 받아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승인한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